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휴식권 보장 및 기·종점 대기공간 확보 촉구 건의안

(진형익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휴식권 보장 및 기·종점 대기공간 확보 촉구 건의안

(진형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6
----------	----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 의 의 원 : 진형익, 정은미, 문순규, 이우완, 감규상
남재욱, 서명일, 차중현, 남호준, 류성국
박영주, 박현재, 구점득, 김원일, 김우진
박강우, 전홍표 의원(17명)

1. 제안 이유

-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을 책임지는 생활밀착형 대중교통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버스를 비롯한 생활교통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창원의 경우 차량이 안전하게 대기하거나 회차할 수 있는 공간과 운수종사자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있지 않음
- 이러한 사례는 비단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은 당연한 권리이고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임
- 따라서 기·종점이나 인근에 대기·회차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종사자 휴게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해야함

2. 주요 내용

-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적 이동을 책임지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임

-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버스를 비롯한 생활교통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창원시의 경우 기·종점 및 인근에 1회 운행 후 휴식을 위해 대기할 수 공간이 없기에 혼잡하지 않은 이면도로를 찾아 다니고 있는 실정임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이 적절히 보장되어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됨
- 따라서 창원시의회는 정부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마련과 인근에 마을버스 전용 주·정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지침 마련을 요구함

3. 건 의 문: 붙임

4. 수 신 처: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토부장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휴식권 보장 및 기·종점 대기공간 확보 촉구 건의안

마을버스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 도심 외곽지역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을 책임지는 생활밀착형 대중교통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버스를 비롯한 생활교통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노선과 차량의 확대뿐만 아니라 마을버스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종점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하여야 한다.

현재 창원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은 약 10개에 이르지만, 차량이 안전하게 대기하거나 회차할 수 있는 공간과 운수종사자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은 다음 운행 시간까지 대기할 장소를 찾아 창원역 일대를 이동하거나 인근 이면도로에 잠시 정차한 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상가와 주민, 다른 차량의 민원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여러 차례 이동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은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을 마친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을 안전하게 세워둘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법령에 규정된 휴식시간은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정 휴식시간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기·종점의 차량 대기·회차 공간과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과 공작물을 ‘대중교통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지원 강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버스 기·종점의 차량 대기·회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에 해당한다.

아울러 항구적인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와 예산 편성, 관계기관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이 조성될 때까지 운수종사자들이 이면도로를 찾아다니며 휴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2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경상남도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차로·횡단보도·소방시설 주변 등 법률상 허용할 수 없는 장소를 제외하고,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마을버스 기·종점 인근 구간에 대상 차량과 허용시간, 정차방법을 명확하게 정한 시간제 마을버스 전용 대기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안전표지와 명확한 운영기준에 따라 항구적인 기·종점 시설이 조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차량 대기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충분한 휴식은 운수종사자 개인의 복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졸음운전과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운행조건이다.

따라서 창원시의회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시민이 더욱 안전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국 마을버스 기·종점의 차량 대기·회차 공간과 운수종사자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선 규모와 운행여건을 고려한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정차·주차 허용 특례를 활용하여 마을버스 기·종점 인근에 시간제 전용 대기구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역·시간·방법·대상 차량

및 안전표지 등에 관한 공동지침을 마련하라.

하나, 창원시는 항구적인 시설이 조성될 때까지 관계기관 및 인근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시간제 마을버스 전용 대기구역과 임시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가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걱정 없이 법정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창원시는 앞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확대·변경할 때 차량 대기·회차 공간과 운수종사자 휴게공간의 확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기반시설 확보계획이 노선 확대정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라.

하나, 경상남도경찰청은 창원시와 협의하여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창원역 등 마을버스 기점 인근 구간에 시간제 마을버스 전용 대기 구역을 지정하고, 안전표지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

2026년 9월 1일

창 원 시 의 회